

생체 안전에 관한 카타제나 의정서 (의정서) 하에서 제 27 조의 협상과정에 관한
세계 산업 연합의 의견

세계 산업 연합(GIC)¹은 의정서하에서 다음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결정을 지지한다: 생체 다양화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대한 침해를 중점취급하는 행정적 접근을 창출하고; 그리고 어떠한 재정적 안전요구도 적용가능한 국가적 영업법에 근거를 두고 또는 부보가능하며, 그리고 교역 또는 기술의 개발과 접근을 금지하지 않아야

책임과 배상에 관한 MOP-4 의 결정에 따른 전진 경로

의정서(MOP-4)의 제 4 차 당사자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생명안전에 관한 카타제나 의정서의 문맥범위내에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공동의장의 우애 그룹 설립을 통하여 생명변형체(LMOs)의 변형경계로 부터 생성되는 침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적절한 국제적 규율과 절차를 정교히 제정하는 당사자들의 작업을 계속하는 결정에 동의한다(“우애 그룹”)². 당사자들은 MOP-4 에서 우애그룹이 2010 년 10 월 당사자그룹(MOP-5) 제 5 차 회의 이전에 두차례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제 1 차회의는 멕시코의 멕시코시에서 2009 년 2 월 23-27 에 개최된다. 우애그룹 회의의 결과는 MOP-5 에서 공동의장이 당사자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MOP-4 에서의 당사자들의 결정은 또한 “생체 다양화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의 침해에 대한 행정적 접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을 다루는” 교본과 (인간의 건강과 재산의 침해와 같은) 다른 전통적 유형의 침해를 설명할 민사책임에 관한 비법률적 구속규정을 다루는 교본사이에 명백한 구별을 만드는 건의된 작업 교본을 포함한다. 당사자들은 MOP-4 에서 결정이 제품의 형식과 유형(국제 체제 또는 국내법을 위한 지침; 구속적 및/또는 비구속적; 민사책임의 지침 및/또는 행정 절차)에 관하여 특정한 결과들을 예단하지 않았고, 의무와 배상 체제를 설정하는 최종 결정이 반드시 협상으로 부터 도출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몇몇 당사자들은 또한 그들이 LMO 들의 세계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최종 결정을 지지할 뿐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명백한 성명을 작성하였다.

¹ 생명안전에 관한 카타제나 의정서를 위한 세계 산업 연합(GIC)은 전세계적으로 수천의 회사를 대표하는 무역협회들로부터 자본투입과 지시를 받는다. 참여자들은 식물과학, 종자, 농업 생물공학, 식품생산, 동물농업, 인간 및 동물의 건강 관리, 그리고 환경과 같은 다양한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조합과 그에 종사하는 회사들을 포함한다.

² 우의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팔라우 및 필리핀)의 6 대표; 유럽연합의 2 대표; 중앙 및 동 유럽의 2 대표; 아프리카 그룹의 6 대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 그룹의 6 대표; 그리고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일본. 다른 당사자들은 우의그룹에 대한 자문역으로, 그리고 세계 산업 연합(GIC)을 포함하여 옵서버로서, 공동의장의 재량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초대될 수 있다.

³우의그룹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협상중인 다른 적절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손해”의 정의를 위한 우선운영 지침에 관한 GIC 견해를 위하여는 부록 I 을 참조하십시오.

MOP-4 결정에 관한 GIC 견해

1. 행정적 접근: GIC 는 LMOs 에 의하여 초래되는 생체 다양화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대한 침해를 중점취급하는 행정적 접근의 개발을 지원한다.

- **행정체계**는 국가 관계 당국이 생체다양화의 보호와 보정에 적절한 초점을 맞추면서 책임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생체다양화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면 책임을 지우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체제는 우의 그룹 회의중에 MOP-5 당사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채택되도록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 기존의 민사책임법과 서로 저촉되지 않으며, *그 것이 즉각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기존의 국가 생체안전 법규에 신속히 통합될 수 있다.
- 의정서하의 행정체제에 의하여 설명되는 **“침해”의 유형은 생체 다양화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대한 침해³**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상의 생체안전(의정서 제 1 및 4 조 참조)에 기여하는 목표를 가진 **의정서의 목적, 범위와 내용으로 부터 명백하다.** 추가하여, “침해”로 판정될려면, 그 주장되는 손해가 역행적이고,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측정가능하고, 그리고 특정한 LMO 에 의하여 명백하게 초래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생체다양화에 대한 침해로 부터 일어나는* 정도까지만 포함된다. 전통적인 침해라고 통상 일컬어지는 사람의 부상, 재산 손상 또는 소득 손실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침해는 의정서의 범위밖이고 국가의 민사법 체계의 관할에 맡겨야 한다.

- 개발될 수 있는 규칙과 절차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책임 체계에서 공통으로 인지되는 방어들을 포함한다; 신/불가항력의 작용, 전쟁 또는 시민 소요의 작용; 제 3 자의 개입; 적합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부과된 강제조치의 이행; 적용 법률을 수단으로 한 활동의 허가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된 특별한 허가; 그리고 그 것들이 수행될 때에는 과학과 기술적 지식의 상태에 따라 해롭다고 인정되지 않았던 활동과 관련한 “최신 기술”.
- 법률의 문제로서, 행정적 접근에 대한 최종 결정의 어느 것도 LMOs 의 경계 초월적 활동으로 부터 결과되는 민사 책임과 배상 분야의 국내법 또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개발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없다. 과도한 처방을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그렇게 함으로서 국내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목록화하여, GIC 가 행정적 접근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느 국가의 민사 책임 체계에 대한 참조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 개발될 수 있는 어느 책임 규정아래에서, 어떠한 재정적 안전성 요구도 적용가능한 국가적 영업법에 근거를 가지고 또는 부보가능하며, 그리고 교역 또는 기술의 개발과 접근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이 금지 무역과 같이 소비자에게 생산품들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교역을 금지하기 쉽고, 그리고 공공의 조사와 소기업체에 대한 장벽이 될것이다.

2. 민사 책임: LMOs 와 관련한 민사책임 규정의 협상은 일반적인 지침이 제출될 수 없는 국가 체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로 인하여 극히 어렵거나 비생산적일 수가 있다. 당사자들이 이 과정으로 진행한다면 GIC 는 LMOs 에 기존 국가 민사 책임규정이 적용가능한 정도를 평가하는데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비 법적인 구속 지침의 정립에 대한 작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 **민사 책임** 체제는 법원이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되는 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집단에게 초래된 재산 또는 인적 손해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판단하는 법체제의 수립을 말한다. 이러한 체제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의 경우에 국가 수준에서 이미 존재하고, LMOs 와 관련된 활동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를 창립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적 민사책임 체제는 국가들이 그것을 중요한 국가의 주권문제와 기존 법체계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협상에 수년이 소요되고 거의 일관되게 법적 효력을 얻는데 실패하였다.
- 당사자들이 책임과 배상에 대한 최종 결정에서 민사책임을 건의하는데 동의한다면 의정서하의 민사책임 토론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결과는 LMOs 로 부터의 전통적인 손해를 건의하기 위한 기존의 국가 법체계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당사자들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비 법적인 구속력의 지침이다. 이러한 지침은 아직 국가적 민사책임 체계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여러 선택들을 제공하고 또 하나의 선택 대 다른 것을 택하는 것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개발 도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속력 체계보다 지침을 창제하는 것이 결과가 당사자들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할 것을 보장할 것이다. 비 법적인 구속력 지침은 여러 옵션중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이 그들의 법체계를 보완하고 그들의 기존 국내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융통성을 허용하는 것이 될것이다.

국가 민사책임 체계에 관한 지침을 천명하는 최종결정은 독특한 국가 법체계에 적절한 각 요소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선택을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옵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그러한 지침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과실기준 책임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방어들을 위한 옵션을 포함하여야 한다. : 즉 신/불가항력의 작용; 전쟁 또는 민간 소요의 작용; 제 3 자에 의한 개입; 적합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부과된 강제조치의 이행; 적용가능한 법의 수단으로 하는 활동의 허가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되는 특수한 수권; 그리고 그것들이 수행될 때의 과학적 기술적인 상태에 따라 해롭지 않다고 인정되는 활동들과 관련된 “최고기술”

부속서류 I

주요 요소들을 위한 선호 운영 교본

아래 교본은 삭제된(선을 그어 지운 표시가 된) 교본에 대한 GIC 제안들을 포함하여, 책임과 배상에 관한 MOP-4 에 남아있는 주요 요소들을 위한 선호 운영 교본이다. 우의 그룹에 의하여 고려될 전체 교본은 : <http://www.cbd.int/decisions/mop4/?m=MOP-04&id=11691&lg=0> 에서 찾을 수 있다.

1.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작업

1.A 행정적 접근

III. 침해

A. 침해 OT6 (6 페이지) 의 정의

1. 이 규칙과 절차는 [, 생체수정 조직체들의 경계초월적 이동으로 부터 결과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침해] [위험들]을 감안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대한 침해에 적용한다.
2. 이 규칙과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조약 제 2 조에서 정의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 [과 지속적인 사용] 에 대한 침해는 다음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역행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 (a) 다른 어떤 인간이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변형을 감안하는 적합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이용가능하다면,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선을 고려하여 측정가능하거나 또는 달리 관찰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 (b) 아래의 4 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요하다.
3. 이 규칙과 절차의 목적을 위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조약 제 2 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침해는 아래 4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요한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역행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그리고 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소득의 감소를 포함하여 국가에 결과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4.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조약 제 2 조에서 정의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중요한” 역행적 또는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하여 결정될 것이다:
- (a) 합리적인 기간내에 자연적인 회복을 통하여 구제되지 않을 변화로 이해되는 장기적 또는 영구적인 변화;
- (b) [생체 다양성의 구성요소에 역행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적 또는 양적 변화의 정도;
- (c)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구성요소 능력의 감소;] [(b 와 c alt) 생물학적 다양성의 구성요소와 그들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잠재력의 질적 또는 양적 감소;]
- (d)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역행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들의 정도;]
- (d alt) [인간의 건강에 대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역행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의 정도.]

IV. 주요 보상 계획

A bis. 행정적 접근의 추가적인 요소들

1. 면제 또는 경감 OT15 (9 페이지)

[국내법이 규정할 수 있는] 면제와 경감은 [비용과 경비가 회수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다. 면제와 경감은 다음의 [배타적] 목록 [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들] 에 근거할 수 있다:

- (a) 신 또는 불가항력의 작용;
- (b) 전쟁 또는 민간 소요의 작용;
- (c) 제 3 자의 개입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초래함];
- (d) [공공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강제조치의 이행]
- (d alt) 공공당국에 의하여 운영자에게 부과된 특정 명령과 침해를 초래한 그러한 명령의 실행
- (e) [국내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그리고 전적으로 그에 합치되도록 행한 명시적으로 허가된 활동];
- (f) [활동이 수행된 시기에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상태에 따라 환경 침해를 초래할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같은 활동];
- (g) 국가 안전의 예외들 [또는 국제적 안전]. (주: 이 규정은 규정 (f) 및 (g)와 함께 또는 없이 적용됨.)

A bis. 행정적인 접근의 추가적인 요소들

5. 범위 OT 19 (10 페이지)

1. [당사자들은], 국제 [법] [의무] 에 합치하도록 자가 보험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책임의 제한 시한 기간중에, 운영자에게 재정적 안전의 확립과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제적 재정적 운영자들로 하여금 이 규칙과 절차를 시행하는 국내의 조치하에 지불불능의 경우의 재정적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운영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보장하는 재정 보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재정적 안전 수단과 시장의 개발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된다.]

1.B 민사 채무

OT 1 (10 페이지)

[당사자들은 민사 채무 체계를 개발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생체 수정 조직체들을 취급할 필요에 따라 기존의 것을 적용할 수 있다.

OT 2 (10 페이지)

(OT 1 을 위하여 전항목이 삭제됨)

2. 민사 책임에 관한 비 법적인 구속규정들에 대한 작업

III. 침해

A. 침해의 정의 OT1 (12 페이지)

[1. 이 규칙과 절차들은 국내법에 규정된 [생체 수정 조직체들의 초경계적인 이동으로 부터 초래되는] 침해에 적용한다.]

[2. 이 규정과 절차들의 목적을 위하여, [생체 수정 조직체들의 초경계적인 이동으로 부터 초래되는] 침해들은 국내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다음을 적용한다:

- (a) 행정적 접근을 통하여 배상되지 않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사용에 대한 침해;
- (b) 생명의 상실과 인적 부상을 포함한 인간 건강에 대한 침해;
- (c) 재산의 손상된 사용 또는 상실에 대한 침해;

(d)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과 다른 경제적 손실;

(e)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손실 또는 또는 동질적, 지방적 공동체에 대한 다른 손실 또는 침해, 또는 식품 안전의 상실이나 저하.]

(주: 첫째의 선택은 위의 OT1 만을 포함하고; 둘째의 선택은 OT1 과 OT2 부들을 포함한다 (a-d, 이 교본에서 모든 네모꼴 괄호들은 지움.)

IV. 주요 보상 계획

A. 민사 책임 OT 4 (14 페이지)

당사자들은 국내법에 따라 [생체 수정 조직체의 국경 초월적 이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 책임법과 절차를 [가질 수 있다][가져야 한다]. 당사자들은 아래의 [최소한]의 요소와 절차들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포함할 수 있다.

1. 책임의 표준과 책임의 이전

(주: 우선 읍손은 OT 5 (14 페이지))

[책임의 표준은, 과실 기준 책임, 철저한 책임 또는 경감된 철저 책임의 하나를 국내법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 대체 읍손은 철저한 책임, 경감된 철저 책임과 과실 기준 책임 읍손을 위한 모든 아래의 교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읍손 1 : 철저한 책임 OT 6 (14 페이지)

[운영자는 [이 규칙과 절차 아래에서] 그의 부분에 잘못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움직임에서 원천을 발견한 생체 수정 조직체의 수송, 이전, 취급

및/또는 사용으로 부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옵손 2 : 경감된 철저 책임 OT 7 (14 페이지)

[1. 과실기준 책임의 표준은 철저 책임 기준이 사용되어야 하는[사용될 수 있는][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a) 위험평가가 생체 수정 조직체를 초위험성으로 식별하였다;그리고/또는]

[(b) 국내법 위반의 행동 또는 생략이 발생하였다; 그리고/또는]

[(c) 어느 승인의 서면 조건 위반이 발생하였다.]

[2. 과실 기준 책임의 표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그 침해를 유발하였다고 입증된 행동을 운영 조절하는[운영자] 단체에게, 그리고 의도적인, 부주의의, 또는 과실의 행동이나 생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3. 철저 책임 표준이 적용될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의 1 절에 따라서,

책임은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입증된 행동에 대한 [운영자][통제 조절하는 단체]에 이전된다.

옵손 3: 과실 기준 책임 OT 8 (14 페이지)

[민사 책임 체계에 있어서, 책임은 이러한 사람에게 있다:

(a) 해당 행동의 운영 조절권을 가진 자;

(b) 행동과 생략을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부주의로 또는 과실 행동으로 법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자;

(c) [그러한 위반이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실제적 침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d) [이 규칙의] 1 부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A bis. 민사 책임의 추가 요소

2. 면제 또는 경감 OT10 (15 페이지)

[국내법이 규정할 수 있다] 면제 또는 경감은 [비용과 경비를 최수한 경우에] 운영자에 의하여 탄원될 수 있다. 면제 또는 경감은 아래의 [배타적] 목록의 [하나 또는 여러 요소에 [근거할 수] [있다].]:

- (h) 신 또는 불가항력의 작용;
- (i) 전쟁 또는 민간 소요의 작용;
- (j) 제 3 자의 개입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초래한];
- (k) [공공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강제조치의 이행]
- (d alt) 공공당국에 의하여 운영자에게 부과된 특정 명령과 침해를 초래한 그러한 명령의 실행
- (l) [국내법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그리고 전적으로 그에 합치되도록 행한 명시적으로 허가된 활동;]
- (m) [활동이 수행된 시기에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상태에 따라 환경 침해를 초래할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같은 활동;]
- (n) 국가 안전의 예외들 [또는 국제적 안전]. (주: 이 규정은 규정 (f) 및 (g)와 함께 또는 없이 적용됨.)

IV. 주요 보상 계획

A bis. 민사 책임의 추가적 요소

5. 범위 OT15 (16 페이지)

1. [당사자들은], 국제 [법] [의무] 에 합치하도록 자가 보상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책임의 제한 시한 기간중에, 운영자에게 재정적 안전의 확립과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제적 재정적 운영자들로 하여금 이 규칙과 절차를 시행하는 국내의 조치하에 지불불능의 경우의 재정적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운영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보장하는 재정

~~보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재정적·안전 수단과
시장의 개발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된다.]~~

3. 다른 규정들

I. 보충적 보상 계획

B. 보충적 집단 보상 조정 OT 1 alt (17 페이지)

규정 없음

또는

당사자들은 이 서류에 기재된 규칙의 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에 비추어 주요
배상 계획을 통하여 배상되지 않은 침해의 경우를 위한 연대책임 조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